##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보윤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467

발의연월일: 2025. 3. 28.

발 의 자:최보윤・김 건・고동진

이헌승 · 서명옥 · 김선교

서천호 · 김상훈 · 박성민

나경원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법체계에서는 재난 발생 시 장애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미흡하여, 장애인이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음. 또한, 재난대피시설의 접근성과 장애인 대상 재난안전교육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장애인의 생명과 신체 보호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.

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시 장애 특성과 정도를 고려한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, 장애인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장애인 재난대피시설을 지정 ·운영하며, 장애인에게 적합한 방식의 재난안전교육과 체험시설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(안 제24조의2부터제24조의4까지 신설).

##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4조의2(재난시 장애인 지원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른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를 할 때 장애인에 대하여는 장애 특성과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추가적인 재정적,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- 제24조의3(장애인 재난대피시설 지정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장애인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장애인이 접근하기 용이한 곳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인 재난대피시설을 지정하여야 한다.
 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재난대피시설을 지역별로 균형적으로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  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재난대피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
- 제24조의4(재난안전교육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「재난 및 안 전관리 기본법」 제66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장애인에게 적합한 의사소통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6조의4 제4항에 따라 안전체험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에 특화 된 안전체험시설을 포함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제24조의2(재난시 장애인 지원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「재난
	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른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를 할 때
	장애인에 대하여는 장애 특성
	과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추가
	적인 재정적, 행정적 지원을 할
	<u>수 있다.</u>
<u>&lt;신 설&gt;</u>	제24조의3(장애인 재난대피시설
	지정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
	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
	우려가 있는 경우에 장애인이
	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장
	애인이 접근하기 용이한 곳에
	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장애
	인 재난대피시설을 지정하여야
	<u>한다.</u>
	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
	항에 따른 장애인 재난대피시
	설을 지역별로 균형적으로 설
	치・운영하여야 한다.
	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
	항에 따른 장애인 재난대피시

<신 설>

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 조할 수 있다.

제24조의4(재난안전교육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6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장애인에게 적합한 의사소통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6조의4제4항에 따라 안전체험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경우장애인에 특화된 안전체험시설을 포함하여야 한다.